

第28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國會事務處

2009年2月5日(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附議된案件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 7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

(10시04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지금 방청석에는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 계신 분들 90여 명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0시05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4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이신 문국현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진과창조의모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저 문국현은 오늘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고 창조적인 일자리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의 서러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우리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 상태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으로 민심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을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만으로도 정부는 네 가지 마음을 잃었습니다.

첫째, 농심(農心)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농민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FTA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농촌과 농민을 방치하고 일부 산업의 이익만을 앞세웠습니다. 300만 농촌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산업을 위해서 30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외통위 박진 위원장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농민과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정책 의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군심(軍心)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무원칙하게 허가했습니다. 한 재벌의 이익을 위해 15년간 지켜 온 군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었습니다. 건설 재벌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군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공군 젊은이들이 어떻게 매일 120층의 빌딩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안보와 국민 통합을 위해 잠실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신격호 회장께서는 애국심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민심을 잃었습니다.

서울 용산 한강로에서 71세의 이상민 할아버지가 경찰 강경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타 돌아가셨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37살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구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일반 시민이 돌아가고 무고한 경찰마저 순직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해야만 합니까?

국가는 이제 이들 부자에게 ‘도심 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17년간 그 자리에서 갈비집을 운영해 온 이들이 어찌 도심 테러리스트란 말입니까? 또 누가 이들을, 선량한 주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왔단 말입니까?

용산 참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중산층 서민을 우습게 보는 비인간적 사건입니다.

이번 용산 참사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토건 중심의 개발만능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2002년 이후 불어 닥친 개발 광풍을 무대로 일부 건설업자가 연출하고 공권력이 주연을 맡고 일부 부도덕한 정치권과 관료가 조연을 하는 ‘서민잡기 속도전’이라는 비난까지 일부 일고 있습

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실하게 사과하고 원세훈 행안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넷째, 천심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녹색 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어기고 땅의 기운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망침으로써 하늘의 대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운하사업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것만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위기 극복 대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책으로 토건 중심, 재벌 중심의 낡은 성장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하, 녹색 뉴딜, 금산 분리 완화 등이 바로 대표적 토건·재벌 중심 성장 전략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시적 일자리, 노무직 일자리, 5년 혹은 10년 후의 먼 미래의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녹색 뉴딜 예산 62조 원은 단순 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녹색은 없고 건설과 콘크리트만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을 아직도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건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건·재벌 중심 경제는 마치 모래 위의 성과 같은 거품경제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금융 거품이 그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국가 위기를 불러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창조적 정치, 일자리 중심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식경제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지식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창조적 정치를 마련할 기회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가 발전의 새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 틀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

걱정 없는 나라, 지식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다 함께 새로운 국가 발전의 틀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솟아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발전의 틀을 구축하는 일과 이번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도 극복하고 미래의 생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 불안의 늪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중심 지식경제, 다시 말해서 취업 걱정 없는 나라, 지식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부하는 나라, 공부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21세기 경쟁력은 공부와 학습능력입니다. 향토예비군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웠듯이 지식근로자는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부하는 사회는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휴먼 빅딜(Human Big Deal)’ ‘사람 중심의 새 틀 짜기’를 제안합니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휴먼 빅딜, 사람 중심의 새 틀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새 틀 짜기는 물적 자본, 재벌 중심의 경제를 사람 중심의 지식경제로 바꾸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사람 중심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4대강에 낭비하지 말고 대운하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들의 가정과 젊은이, 공교육과 산업교육 그리고 보육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 중심에서 수출과 내수 중심으로, 국토 개발에서 사람에 대한 개발로, 재벌 중심에서 중소기업 상생시대로,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경제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토건·재벌 중심 성장 전략은 산업시대의 낡은 전략으로 이제 지식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수출과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수를 늘리려면 일자리 강국, 중소기업 강국,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따뜻한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개발을 위해서는 창의적 학교 교육과 의무적 산업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일

자리 2300만 개를 육체근로자로부터 지식근로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교육을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산업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언어·다문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근로자의 기능적 문화적 유연성을 높여 직장을 부담 없이 스스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우리들이 자라 온 그 시절처럼 두 자녀 이상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껏 낳아서 마음껏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 후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 경제, 이 사회가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자녀 사회는 고령화사회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장시간 과로근무체제를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노-학 병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차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과로하는 사회입니다. 과로는 한때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분의 정부 차관이 최근에도 순직했습니다. 수많은 경찰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3000명이 매년 돌아가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돌아가고, 왜 다칩니까? 과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2000시간 안팎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는 2400시간, 연간 2400~2500시간 일하는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일본이 1900시간 일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가장 많이 일하는 영국이 1600시간대 그리고는 다 1500시간 미만입니다.

왜 우리는 일자리를 원하는 600만, 800만 가까운 잠재적 경제활동 가능인구를 놔두고 2300만이 한 사람 반의 몫, 두 사람 몫을 하면서 생명을 잃고 조기 노동력 상실을 당하고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까? 바로잡아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근면해서 역설적으로 불행해지고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확실히 제한해야 함

니다.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200만 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이동이 자유로우면 창업과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가들이 투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편안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지면 혁신과 창조를 통한 지식경제력과 일자리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잠재적 경쟁력의 보고입니다.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듯이 이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되어 21세기 한국 경제 도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학습훈련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체제를 구축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명품화·세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품과 소재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간 혁신을 연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 비중도 늘어날 것입니다. 부품산업의 대일 무역적자만 해도 2008년의 경우 330억 불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산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의 기본산업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강국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학력 청장년,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대학을 연계·혁신하는 지식과 혁신의 대연동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부가가치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 포스코 같은 위대한 기업들이 저만큼 세계적 수준에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기업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부가가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사회로 그리고 한시적 일자리에서 선진국과 같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려면,

비정규직이 10%가 안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이제 저부가가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사회로, 육체경제 사회에서 지식경제 사회로 이전해 나가야 됩니다.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일자리 나누기가 해결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차트에서도 나왔듯이 2300만 기존의 일자리를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유지하고 이분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만 고학력 청장년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기존에 2300만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200만 고학력 청장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함께 만들 때 우리 직장인과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은 가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임금이 높은 고학력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미래 세대에겐 희망을 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면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신규 일자리 수백만 개를 확실히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이 경로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36시간으로 줄이면 당장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조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장시간 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당장 사고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제품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불량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품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제품의 부가가치가 독일처럼,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보다 2, 3배 높게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산업교육을 국가와 사회가 확실히 제공해야 됩니다. 독일은 1000개의 전문직업학교를 갖고 있어 신기술과 신환경에 대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격증과 영업허가증까지 취득하도록 하여 창업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독일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나누기는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기대책일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한국 경제·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개조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식시대에 한국경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삶의 질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처럼 우리도 온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고부가가치 지식근로자 육성,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위기를 거품경제로 잘못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와 산업교육 국가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60년 고등교육의 힘으로 제1의 경제도약을 달성하였듯이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교육의 힘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이 국력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요즘 주요 지도자들이 경제위기 극복 방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자리 나누기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번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원혜영 원내대표도 어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이를 재삼 강조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노조들도 자기 희생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방송이 일자리 나누기 특집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공통의 전략과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결국 주요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모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말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은 반대 이론 때문에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범국민적·사회적 대타협과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여 협약을 도출해야 합니다.

일 자리를 나누고 산업교육을 위한 사람 중심 새 틀 짜기, 휴먼 빅딜이 우리 온 국민 속에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을 통합시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또한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교육을 보장하고 혁신과 창조를 온 국민이, 온 정당이, 기업과 대학과 사회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가 많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법, 일명 잡세어링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해야 합니다. 유한김벌리 같은 회사는 4일 일하고 4일 쉬면서 공부합니다. 물론 4일 일하는 동안에 12시간 일하기 때문에 8일 중에 48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7일로 따졌을 때 42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30여 개국에 최고의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기업이 최근에 200여 개 늘었습니다. 이것을 2만 개, 20만 개, 200만 개 기업과 자영업까지도 확대시켜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해야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부담금을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교육 무상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중소기업의 모든 산업교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교육비는 물론 교육에 따른 인건비까지 정부가,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식기업을 과감히 육성해야 합니다. 중

소기업의 영역을 독일처럼 500인까지 확대하고, 500인 이하 기업으로서 장시간 과로근무를 해소하는 기업들, 평생학습을 도입하는 기업들을 전략수출기업처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기업진흥법이 필요합니다.

넷째, 3년간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속에서, 학습을 보장하는 속에서 과감하게 노사 간 무분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섯째,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의 태반을 정규직 할 수 있는 확고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국회 일자리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앞서 정세균 대표도, 이회창 총재께서도 지지하시고 늘 환노위에 계셨던 홍준표 대표도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협력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들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범국민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당, 노동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NGO, 전문가,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다 함께 미래를 향해서 참석하여 국난을 이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및 가용자원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투자비용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거품 건설비용은 부정부패의 원천이 종종 되곤 합니다. 연간 거품 건설비가 많을 때는 5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건설 투자비용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면 정부 부문만에서도 연간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연 16조가 넘는 산재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연간 10조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도 중단하면 연간 12조 원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200만 개 창출되면 실업보험 재정부담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 10조, 많으면 20조 이상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부적 개혁을 위해서 휴먼 빅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휴먼 빅딜만으로, 내부적 혁신만으로 대한민국의 활로는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빅딜이 필요합니다. 우

리가 세계로 보다 과감히 나아가야 됩니다. 동북아 빅딜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주도적으로 담대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륙과 단절된 대한민국이 날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다문화·다언어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대륙과 연계하여 고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남한·북한·미국, 3자의 새로운, 과감한 협력의 틀을 정립해야 합니다. 단절된 남북 관계를 연계하여 유라시아로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빅딜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동북아 빅딜은 내부 혁신에 이어서 국제 관계에서 큰 혁신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빅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여 주변국들과의 상생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압박과 압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공동 번영의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적대적 대결 정치로 서로 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과 상생으로 풀어야 합니다. 대화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는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대화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북한과 맺은 각종 약속들도 가능하면 지켜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생해서 살길을 찾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생존권과 번영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납품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한테 희망이었습니다. 2·3단계의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10배나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단 용지 값이 우리 대한민국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6분

의 1입니다. 인건비는 15분의 1, 1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간을 버는 데 개성공단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바마의 미국과 남북한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우수한 많은 노동력과, 일본과 미국의 기술과 자본과 시장, 중국의 제조 노하우를 결합시키고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과 연계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성장 동력이 한반도에서 탄생될 것입니다.

이른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기존의 환황해 협력벨트와 더불어 동북아 빅딜의 핵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와 대한민국이 공동도전하는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첫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 시장은 넓고 기회는 우리에게 크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중국, 독일을 보십시오.

이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독일과 중국은 1조 2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역 흑자가 2500억 달러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도 무역 흑자가 10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식경쟁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휴먼 빅딜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강국이 바로 수출 강국, 무역 흑자 강국을 만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제 정당은, 젊은이 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같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였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 가야 합니다. 서로 불신하고 제압하려 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미래로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우리 국회만 변하면 정부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 시대정신에 우리 국회가 집중하면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면 됩니다. 보육과 교육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에 우리 국회의 온 노력이 집중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맑은 눈망울로 저희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면 해결책은 나옵니다.

우리 다함께 손에 손잡고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함께 나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문국현 의원 소개로 서울 은평구의 지역구민 10인이 방청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은 관계 국무위원 외에는 정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진형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 趙鎭衡**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천 부평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유기준 의원 등 일곱 분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2009년 1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관련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인명부에 올리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선거 및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 중 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현지 재외공관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둘째,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

였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재외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동일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하였고,

아홉째,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께서 선상투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셔서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

의를 통하여 의장님께서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시려는 노력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부득이 이번에 함께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김성곤 의원과 권경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여야 합의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2009년 1월 29일 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국민투표의 투표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 거소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투표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효된 관련 조문의 우선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심사보고해 드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안한 법률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조진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또 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충남 아산시 지역구 노인대학에서 마흔일곱 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한 오늘의 이 역사적인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토론을 꼭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염원과 일부 동떨어진 심의 결과가 있었기에 그 점을 동료 의원님들께 상기시키고 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의 상임대표로서 그동안 미국, 일본, 호주 등 현지 교민들과 함께 권익 신장을 위해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동포들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구촌 200여 개 나라 중 무려 175개국에 진출한 우리 700만 해외동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든 고국을 찾을 수 있는 일종의 ‘홈 커밍데이’, 즉 ‘세계 한인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조국으로부터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참정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70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전담 기구인 해외교민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여간 김수환 추기경님, 김준곤 목사님,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님 등 종교를 초월한 민족 지도자들을 상임고문으로 모

시고 '세계 한인의 날'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당시 국회의장과 외교통상부장관 등을 통해서 청원운동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매년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하는 데 성공하여 올해 제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외동포들의 두 번째 간절한 염원인 참정권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재외동포들에게 당연히 부여해야 할 참정권을, 즉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절반뿐인 참정권 부여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나 권리는 주민등록 여부에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참정권이 전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재외동포들에게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및 7개 종단 대표들과 함께 우리 해외동포들 뜻을 모아서 즉각 추가로 발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투표 공식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투표권 보장은 선상투표, 공관에 한정하는 투표 장소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새 법률안이 통과되면 2012년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려 3년여 동안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 보완하지 못할 법과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지역구 투표권 부여, 투표소의 확대 제공, 인터넷·선상투표 실시는 3년의 기간이면 어떠한 난제하에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또한 앞으로 제기될 위한 소송에 미리 대비하는 합리적인 조치도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 7개 종단 회장단과 저희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대표단이 국회에서 회합을 갖고 일단 참정권 부여에 대한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도 냈습니다.

이제 우리 여야가 보다 좋은 정책으로 선한 대

결을 해서 해외동포의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의 제약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의원 한나라당 창원갑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께서 전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 결과 이것은 김영진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지 민주당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말 심도 깊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지역구의원에게 한해서는 일시체류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선거권은 네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선거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선거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선거, 네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서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투표권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여야 구분 없이 진지한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첫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문제점을 해소한다, 가능한 한 투표권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원칙 하나, 또 공정한 선거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부정·비리 선거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 그리고 민의는 가감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왜곡된 민의가 반영되어서는 또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쳐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선거여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진 의원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역구의원에게 왜 투표권을 주지 않았느냐, 인터넷 투표 왜 허용하지 않았느냐, 또 선상투표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심의원칙 심의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잘 아는 그런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해외에 나간 영주권자들은 지역구를 어디로 선정할지 연구권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조차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물론 최종 거주지 본적지로 연구지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세 3세에 이르러서는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역구 의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연구해서 반영시키자 해서 보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인터넷 투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기술적 수준으로서는 운영요원의 조작 가능성, 해킹 가능성, 기기 오류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전부 보완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상투표 문제, 아까 존경하는 조진형 위원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전면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이번의 헌재 판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공개투표를 피할 확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일시체류자와 마찬가지로

같이 기회를 부여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다면 항구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단기체류자와 같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 정개특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권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윤상현 의원 투표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김 의원 것은 따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2인으로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7인, 기권 9인으로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권 관련 개정안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선상투표를 비롯한 나머지 법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재구성해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조만간에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형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6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김광림	김금래	김노식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옥이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국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손숙미
신낙균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춘석	이춘식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장선	정하균	정해결	조영택
조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규식
최문순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범도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반대 의원(2인)

유기준 이진복

기권 의원(13인)

김영우	김진표	김태환	문학진
송민순	신학용	양승조	이광재
이석현	이종걸	임두성	최영희
허원제			

(김재경·박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78인, 찬성의원 163인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김광림	김금래	김노식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옥이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학송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노철래	문국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손숙미	신낙균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장선	정하균
정해걸	조영택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규식	최문순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범도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기권 의원(12인)

김영우 김태환 노영민 문학진
 송민순 신학용 양승조 이석현
 임두성 주승용 최영희 허원제
 (박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
 원 176인, 찬성 의원 164인임)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7인)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김광림
김금래	김노식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옥이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국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손숙미
신낙균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장선	정하균	정해걸	조영택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진 규 식
최 문 순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허 범 도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장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9인)

김 영 우	문 학 진	송 민 순	신 학 용
양 승 조	이 중 결	임 두 성	최 영 희
허 원 제			

유 원 일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두 환	윤 상 현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광 재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시 중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삼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결	이 중 구	이 중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두 성
임 영 호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해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문 순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추 미 애
허 범 도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장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출석 의원(24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운 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낙 성	김 노 식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효 재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국 현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종 희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응 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중 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길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립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정 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업	유 승 민

○개외 시 재석 의원(135인)

강 길 부	강 용 석	강 운 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선 택
권 영 세	김 광 립	김 금 래	김 낙 성
김 노 식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태
김 소 남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철 래
류 근 찬	문 국 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상 은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희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응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중 표	송 영 길	송 훈 석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안효대	양승조	양정례	오제세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유원일	유재중	윤두환	이경재	이윤석	이운성	이은재	이인기
이명수	이범래	이상민	이성남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중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제	이춘식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임동규	임두성	장세환	장윤석
이주영	이진삼	이춘식	이한구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희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전재희	정장선	정하균	정해결	조영택
전현희	정미경	정세균	정양석	조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정영희	정옥임	정진석	정진섭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순형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규식
조진혁	주호영	진수희	진영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철국	추미애	허범도	허원제	허천
허범도	허천	현기환	홍일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희덕	황영철		홍장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산회 시 재석 의원(177인)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김광림
김금래	김노식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국현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손숙미	송민순
신낙균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출장 의원(1인)

이계진

○청가 의원(21인)

권영진	김기현	김재균	남경필
박주선	서청원	성윤환	송영선
우제창	유일호	이범관	이철우
임태희	임해규	정몽준	조윤선
조진래	현경병	홍정욱	황우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승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법무부장관	김경한
국방부장관	이상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장평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환경부장관	이만희
노동부장관	이영도
여성부장관	변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	국	환
통일부차관	홍	양	호
행정안전부제1차관	정	창	섭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유	영	학

【보고사항】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리특별	이달곤	배은희	한나라당	2009. 2. 5

○의안 제출

사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박순자·송민순·박은수·김영진·이시종·유기준·김성수·강석호·안효대·이인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박순자·송민순·양승조·김우남·김영진·이시종·안상수·유기준·김성수·강석호·김재윤·김소남·안효대·이인기 의원 발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장제원·양정례·성윤환·정옥임·유정현·김소남·심재철·이한성·정진석·박민식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김낙성·우윤근·이명수·이재선·류근찬·허천·임영호·최철국·손범규·이사철·이영애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박상돈·류근찬·양승조·김용구·이명수·임영호·주승용·심대평·홍재형·김영진·이진삼·박선영 의원 발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2009. 2. 4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 5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박상돈·류근찬·양승조·김용구·이명수·임영호·주승용·심대평·홍재형·김영진·이진삼·박선영 의원 발의)

2월 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나성린·서병수·이은재·차명진·안효대·유일호·임두성·심재철·김효재·김광림·진수희·강길부·정태근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추미애·김희철·최인기·김성순·김재윤·홍희덕·양정례·김상희·송영길·김영진·우제창·김성곤·유성엽·원혜영·신낙균·박은수·이용삼·박대해·강성천·이화수·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손숙미·윤영·임동규·김성수·유재중·이달곤·남경필·원희룡·이시종·김소남·안효대·조진래 의원 발의)

2월 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강창일·김춘진·박은수·양승조·장세환·송민순·김영진·김우남·이윤석·이정희·김성순·송영길·김성곤·김상희·우제창·유성엽·김진표·이시종·이용삼·안효대·홍희덕·김재윤 의원 발의)

2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추미애·김희철·송민순·김우남·양승조·최인기·김성순·김재윤·양정례·김상희·송영길·우제창·김영진·김성곤·유성엽·원혜영·신낙균·이시종·홍희덕·김성수·이용삼·박대해·강성천·이화수·김진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추미애·김희철·최인기·김성순·김재윤·홍희덕·양정례·김상희·송영길·김영진·우제창·김성곤·유성엽·원혜영·신낙균·박은수·이용삼·박대해·강성천·이화수·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추미애·김희철·최인기·김성순·

김재윤 · 홍희덕 · 양정례 · 김상희 · 송영길 · 김영진 · 우제창 · 김성곤 · 유성엽 · 원혜영 · 신낙균 · 박은수 · 이용삼 · 박대해 · 강성천 · 이화수 · 김진표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추미애 · 김희철 · 최인기 · 김성순 · 김재윤 · 홍희덕 · 양정례 · 김상희 · 송영길 · 김영진 · 우제창 · 김성곤 · 유성엽 · 신낙균 · 박은수 · 이용삼 · 박대해 · 강성천 · 이화수 · 김진표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추미애 · 김희철 · 최인기 · 김성순 · 김재윤 · 홍희덕 · 양정례 · 김상희 · 송영길 · 김영진 · 우제창 · 김성곤 · 유성엽 · 원혜영 · 신낙균 · 박은수 · 이용삼 · 박대해 · 강성천 · 이화수 · 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4 정부 제출)

2월 5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전혜숙 · 김우남 · 김효석 · 박영선 · 박은수 · 백원우 · 송민순 · 송영길 · 이미경 · 이종걸 · 조정식 · 최영희 · 최철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전혜숙 · 김우남 · 김효석 · 박영선 · 박은수 · 백원우 · 송민순 · 송영길 · 이미경 · 이종걸 · 조정식 · 최영희 · 최철국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전혜숙 · 김우남 · 김효석 · 박영선 · 박은수 · 백원우 · 송민순 · 송영길 · 이미경 · 이종걸 · 조정식 · 최영희 · 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9. 2.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출)

휴회의 건

(2009. 2. 5 의장 제의)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5일간)

○의안 심사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6 박준선 · 이한성 · 유기준 · 안상수 · 강성천 · 정미경 · 홍일표 · 이인기 · 남경필 · 김효재 · 구본철 · 황영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8. 7. 15 유기준 · 송영선 · 이경재 · 조전혁 · 유성엽 · 신상진 · 신학용 · 구본철 · 권경석 · 안경률 · 양정례 · 이한성 · 김무성 · 강성천 · 김희철 · 정하균 · 홍정욱 · 안상수 · 정양석 · 이진삼 · 임태희 · 이정선 · 정해걸 · 김성수 · 나경원 · 손범규 · 김동성 · 심재철 · 안홍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이윤석 · 우윤근 · 주승용 · 김성곤 · 최인기 · 송민순 · 송훈석 · 조영택 · 강창일 · 김부겸 · 허범도 · 변용전 · 김영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8. 8. 4 강창일 · 김희철 · 김우남 · 송민순 · 최인기 · 김재윤 · 강기정 · 이진삼 · 이윤석 · 김종률 · 박기춘 · 우윤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6 박준선 · 이한성 · 유기준 · 안상수 · 강성천 · 김성태 · 정미경 · 홍일표 · 이인기 · 남경필 · 김효재 · 구본철 · 황영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08. 10. 1 조원진 · 김효재 · 박종희 · 성윤환 · 송광호 · 유재중 · 윤영 · 이명규 · 이진복 · 이한성 · 정진섭 · 홍정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3 김성곤 · 송영길 · 양승조 · 오제세 · 서종표 · 장세환 · 이용삼 · 최문순 · 강봉균 · 신학용 · 강기정 · 전병헌 · 김동철 · 이종걸 · 김재윤 · 김재균 · 김우남 · 김영진 · 천정배 · 김성순 · 전혜숙 · 박기춘 · 박선숙 · 주승용 · 전현희 · 김유정 · 유성엽 · 우제창 · 김종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3 권경석 · 장제원 · 유정현 · 이범래 · 원유철 · 정갑윤 · 신지호 · 김태원 · 안경률 · 이인기 · 이은재 · 김성조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3 김성곤 · 송영길 · 이춘석 · 김영진 · 김재윤 · 김상희 · 안규백 · 전현희 · 강창일 · 김성순 · 장세환 · 최문순 · 박상은 · 조정식 · 강기정 · 김유정 · 유선호 · 우윤근 · 정장선 ·

신낙균 · 원혜영 · 원희룡 · 김성희 · 정옥임 ·
유성엽 · 황우여 · 우제창 · 김종률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3 권경석 · 장제원 · 유정현 · 이범래 ·
원유철 · 정갑윤 · 신지호 · 김태원 · 안경률 ·
이인기 · 이은재 · 김성조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청원 심사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

(2008. 10.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 리버파크 1518호 배희철 외 352인으로
부터 홍준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